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 검토의견

최근 상공부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민간업계의 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는 민간업계의 검토의견을 종합,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의 검토의견 및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註

검토의견

무역업자의 선별적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1. 특정사업자 지정 및 독점적 지위부여에 따른 민간VAN사업 활성화 저해

- 무역자동화사업 전반(망구축, 시스템, S/W, 표준화등) 사항에 특정사업자를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일괄추진케 하므로써 VAN사업의 시장경쟁체제 도입 및 자유화 추세에 역행.
- 고도 정보화사회 도래에 따라 무한경쟁 영역인 VAN사업분야 중에서도 잠재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VAN시장을 특계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자가 독점케 함으로써 민간VAN사업자의 시장 기반이 박탈 될 것이며, 따라서 민간의 창의적 정보통신 신기술 개발 및 시장창출 노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무역업자의 자율적 서비스선택권 제한

- 무역자동화서비스 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3. 전자서류의 효력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 무역자동화는 그 기본이 상거래로서 거래를 위해 교환되는 전자서류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 효력인정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법률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효력의 근거를 마련함은 당위성이 부족하고 타분야 법률과의 형평성이 결여됨.
 - 전례 : ①주민등록전산화 : 호적법 개정
 - ②관세업무전산화 : 관세법 개정
 - ③국세업무전산화 : 국세법 개정

4. 시스템운영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한계 불분명

-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회사를 경유하여 신청 또는 승인통지등을 전송하는 경우 회사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동 법률안은 규정하고 있으나

전송상의 오류, 파일의 파손, 회선고장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이 손괴, 지연 또는 미달될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그 손해에 대한 부담이 무역업자에게 전가됨.

5. 민간VAN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이중규제 초래

- 무역자동화망사업은 부가가치통신사업 영역으로서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2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사업자를 지정하고 관련 무역유관기관 또는 무역업자들로 하여금 이용도록 함은 민간VAN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규제를 초래케 됨.

6. 무역자동화위원회와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중복 초래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간전산망의 효율적 구축 운영과 조정통제를 위하여 범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전산망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간전산망적 성격의 무역자동화망관련 별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전산화의 일관된 추진과 운영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사료됨.

7. 공정접속 보장 미흡

- 무역업자가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자동화망을 경유하여 무역유관기관과의 업무처리가 불가피할 것임과 향후 민간이 무역VAN사업에 신규참여하게됨을 전제로 할 때 동 법률안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무역 유관기관의 의무가입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민간 무역VAN에 대한 공정접속보장 대책이

미흡함.

- 따라서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지정받은 사업자에게 접속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임(사실상의 독점형태임).

8. 새로운 통상마찰 초래 우려

- 한미간의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상공부는 일관되게 통신서비스부문에 대한 자유화·개방화를 주장하여 왔음.

그러한 정책추진결과로 현재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이 현저하게 개방화 자유화된 시점에서 무역자동화부문의 VAN사업자를 정부가 지정하고, 자금을 특별 지원할 경우 한미간의 새로운 마찰소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1.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정경쟁 보장 요망

- 민간의 기업경영과 국제무역에서의 경쟁우위 확보에 관건이 되는 무역VAN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체제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민간업계의 공통된 견해임.
- 따라서 정부(상공부)가 구상하고 있는 무역VAN 육성방향을 관련 제도, 세제, 금융 등의 정부지원 시책과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동 법률안의 사업자 지정조항을 수정(삭제)하여
- 부가가치통신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막대한 공공자금 투입을 통하여 초기에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함.

2. 무역업자의 자율적 서비스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 무역자동화 서비스체제를 다원·다양화하여 무역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부가가치통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참여 보장과 아울러 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역유관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무역VAN에 접속하도록 의무규정 명시 요망.

3. 전자서류의 효력근거 마련을 위한 근원적 제도책 마련

- 무역관련 전자서류의 효력요건등을 상거래 관행의 근거가 되는 상법상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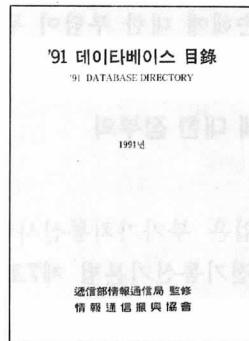
4. 사업자의 책임한계 명확화

-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신뢰성 기준, 보안규정등을 준수토록 하여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서류의 전송상 오류발생등의 경우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5. 무역자동화망의 국가기간전산망에의 통합운영 검토요망

- 규모, 내용면에서 국가기간적 성격이 강한 무역전산망의 효율적 운영과 타 전산망(행정망, 금융망 등)과의 연동성, 연계성을 감안할 때
- 독립적인 별도 무역자동화위원회의 신설운영을 재검토하고
-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일관된 조정, 통제, 감리를 받는 전담사업자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망.

'91 데이터베이스 목록 발간



국내에서 구축,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 현황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지난 5월부터 7월 까지 3개월간 연인

원 260명을 동원해 국내에서 DB를 구축, 사용하고 있는 업체와 기관을 전수조사한 협회는 지난 9월에 이를 토대로 「'91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발간, 보급하고 있다.

이 목록은 조사대상업체를 직접 방문, 설문 조사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데, 165개 응답 업체(기관)의 DB 개요가 수록돼 있다.

4·6배판 280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동 목록은 특히 DB생산업체(기관) 현황, DB 유통업체의 DB 구축내용과 이용방법, 조사한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등을 각각 나누어 수록하고 있으며, 또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업체(기관)별 DB명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 DB 현황까지도 함께 정리해 두고 있다. 협회는 이 목록을 매년 수정, 보완해 증보판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함은 물론 DB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현재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서비스 할 계획을 세우고 IP계약을 추진중이다.

「'91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1부당 가격은 5천원이며, 구입신청은 협회 DB담당팀에게 하면 된다.(전화:(02)796-6444, FAX:(02)796-6510)